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2. ____.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2월 13일
이필용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2. 26)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필용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1)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를 제29조로 하고(2005.8.4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을 제36조(2005.12.30 개정)로 함 (안 제1조).
- (2)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 60%,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2006.11.23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하여 도내 시군간 재정불균형 완화(안 제6조제1항).

나.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40은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세징수율을 제고하고 또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또는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 3호 및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신설)

다.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6월과 12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안 제12조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재정보전금은 도내 시군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음.

재정보전금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 60%, 징수실적 40%로 배분되어 인구와 징수실적이 많은 지역 즉,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 많

은 재원이 배분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배분기준을 인구 50%, 징수 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하여 시·군간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음.

재정보전금의 10%를 차지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책추진의 방향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군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우리 도의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낙후 지역개발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추가하는 사항과

또한 도세징수실적¹⁾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보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도세징수율²⁾ 제고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그리고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보전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도세징수실적 : 도세 총액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가 차지하는 비율

2) 도세징수율 :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다음에 “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를 추가하며, 동조 제2항 제3호중 “도세징수실적”을 “도세징수율”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②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회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u>도세징수실적이</u>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신설)</p> <p>4. (생략) (신설)</p> <p>제 12조(시행규칙) (생략)</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도세징수율이</u>----- -----</p> <p>4. <u>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u></p> <p>5. (현행과 같음)</p> <p>제 12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회 과 12월에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